대한의사협회
KOREAN MEDICAL ASSOCIATION
"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"

우)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7, 8F[www.kma.org]/ 전화(02)6350-****/ 전송(02)790-8911
보험정책국 국장 김기성 [6574] 보험팀장 손용석 [6571] 팀원 문성현 [6587]/E-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3864호

시행일자 2019. 7. 1.

수 신 각 시도의사회장, 각 학회장, 각과 개원의협의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(집행정지 안내)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고시(보건복지부 2019-116호)

1. 관련근거 :

가.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(고시 제2019-116호, 2019.6.24.)

나. 2019아11800 집행정지,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(2019.6.27)

2. 보건복지부에서 2019.6.24. 개정 고시한「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16호) [별표1]의 별지2 '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' 중 붙임의 의약품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정지되어, 2019.7.19.까지 기존 상한금액이 적용됨을 안내하여 온바,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제약사명	집행정지 품목	효력정지일
유한회사 한국비엠에스제약	엘리퀴스정 2품목	2019.7.19.일 까지

붙임: 집행정지 품목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